

2018년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

■ 목 적

-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

■ 급식지원 선정기준

- 지원연령: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
 - 다만,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지원
 - 18세 미만의 학교 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
- 지원대상: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,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
 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 - 보호자가 사망,가출,수감 등의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
 - 보호자의 사고,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아동
 - 보호자로부터 방임·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 - 그밖에 담임교사,사회복지사,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
■ 급식지원 신청방법

- 일반아동 : 방문신청(해당 동 행정복지(주민)센터를 방문하여 신청)
-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
: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에 신청

■ 신청기간 : 2018.12.1~2018.12.29

■ 급식지원 방법

-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, 동봉된 “아동급식 신청(추천)서”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희망급식지원방법

급식지원방법	[] 일반음식점	[] 행복도시락
	[] 지역아동센터	[] 학교급식소

■ 신청시 필요서류

- 신청아동의 가정환경 및 소득요건, 결식우려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(예 :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납입증명서, 보호자의 재직증명서, 고용주의근로확인서 등)

- ※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※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
※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■ 각 동 아동급식담당공무원 연락처

동 명	전화번호	동 명	전화번호	동 명	전화번호
송의1,3동	728-6110	학익1동	728-6253	주안4동	728-6392
송의2동	728-6121	학익2동	728-6266	주안5동	728-6418
송의4동	728-6159	도화1동	728-6294	주안6동	728-6437
용현1,4동	728-6171	도화2,3동	728-6308	주안7동	728-6456
용현2동	728-6191	주안1동	728-6332	주안8동	728-6470
용현3동	728-6207	주안2동	728-6349	관교동	728-6494
용현5동	728-6228	주안3동	728-6365	문학동	728-6508

※미추홀구청 여성아동복지과 드림스타트팀 아동급식담당 ☎032-880-7338

<서식 1호>

아동급식 신청(추천)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$\checkmark$ 표시를 합니다.

※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

(앞쪽)

신청(추천)자	성명	아동관의 관계	생년월일
	주소		전화번호(휴대폰)
보호자 ※ 신청(추천)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	성명	관계	동거여부
	직업(구체적으로)	월수입(평균)	전화번호(휴대폰)
	주소		
대상아동 1	성명	성별 [] 남 [] 여	취학여부 [] 취학 [] 미취학
	학교명 [] 초 [] 중 [] 고등학교 학년 반		
	주소		주민등록번호 (세)
대상아동 2	성명	성별 [] 남 [] 여	취학여부 [] 취학 [] 미취학
	학교명 [] 초 [] 중 [] 고등학교 학년 반		
	주소		주민등록번호 (세)
신청(추천)의견	신청(추천)사유	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구의 아동 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☐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% 이하 가구의 아동 ☐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☐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☐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 ☐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·통반장, 사·군·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(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) ☐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	
	급식지원 필요 유형 (결식여부)	※ 중복 선택 가능 ☐ 연 중 : ☐ 조식 ☐ 중식 ☐ 석식 ☐ 학기 중 평 일 : ☐ 조식 ☐ 석식 토·공휴일 : ☐ 조식 ☐ 중식 ☐ 석식 ☐ 방학 중 : ☐ 조식 ☐ 중식 ☐ 석식	
	희망 급식 방법	☐ 단체급식소 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 ☐ 일반음식점 ☐ 도시락 배달 ☐ 부식 배달 ☐ 기타 ()	

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으로 신청(추천)합니다.

20 년 일 일

신청(추천)자 :

서명 또는 인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	--	-----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(보호자)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